

귀국학생 등 해당자별 구비서류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대상자[특례입학,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일 반 편입학 (재취학)	비 고
	외국에서 초·중·고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정부초청귀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제출 ○ 교육부 누리집 미탑재학교 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 정원외)증명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운 초·중·고 ○ 최종 재학년월일 및 최종 재학학년 명시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24 누리집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가 행정구청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의 경우 제출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청,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누리집 ○ 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 외국인 학생은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제출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주무부 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24 누리집 ○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동포자녀에 한하여 제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부,모,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24 누리집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대상자[특례입학,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일 반 편입학 (재취학)	비 고
	외국에서 초 중 학교 과정 을 모두 이 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 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정부초청귀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확 인서				○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학 력확인서				○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교 육보호대상자 증 명서				○			○ 해당 행정구청
정당한 해외출국 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	○ 파견 관련 소속기관
예방접종 확인서	(○)	(○)	(○)	(○)	(○)	(○)	○ 거주지 관할 보건소 {(2016. 교육부 '학생 감염 예방 종합대책'(2016. 2.)}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제3국 수학인정서: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에서 발행
2.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고, 영문도 학교에서 필요 시 한글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 받은 후 제출
3. 교육부 누리집의 외국학력 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된 학교는 해당 목록부분을 인쇄하여 별도의 확인서 서식과 함께 제출하고 누리집 미탑재의 학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4. 구비 서류 발행처 등
 - 1) 출입국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동 주민센터
 -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
 -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청, 동 주민센터
 - 민원24 사이트
 -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청, 동 주민센터
- 민원24 사이트

4) 예방접종 확인서

-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 서류
- 발행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발급 방법: 해외 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 후 전산등록이 완료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A형간염, MMR(홍역, 볼거리, 풍진), Tdap/Td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외국의 공문서 국내사용 관련 규정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2호에 따른 확인도장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 현행: 재외공관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

▪ 개선: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다만,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 추진배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음. 이에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간소화 내용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 영사 확인 ○ 아포스티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학력인정학교(붙임1 참조)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하고 확인서(붙임2 서식)를 징구함 ※ 다만, 누리집 미 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 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 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유의사항: 향후 개선된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 (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니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편입학이 취소됨을 귀국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

- 붙임 1.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1부.
 2. 확인서 1부.

【붙임 1】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지역권	학력인정학교 목록 요청 국가명 ※ ()은 주 또는 도시명
아시아권 (15개국)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베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인도(뉴델리 등), 터키(이스탄불),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등) 몽골(울란바토르), 캄보디아(프놈펜 등)
유럽권 (9개국)	영국(런던 등), 프랑스(파리 등),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러시아(모스크바 등), 오스트리아(비엔나 등),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등) 아일랜드(더블린 등), 체코(프라하 등), 크로아티아(자그레브 등)
북미권 (2개국)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남미권 (7개국)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롬비아(보고타), 파라과이(아순시온), 멕시코(멕시코시티 등) 에콰도르(키토 등), 파나마(파나마시티 등)
오세아니아 (2개국)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중동 (2개국)	아랍에미리트연합(두바이 등), 이란(테헤란 등)
아프리카 (1개국)	이집트(카이로 등)

※ 세부 국가별 학력인정학교 목록: 교육부 누리집 (메인 > 정책 > 초·중·고 교육 > 교육과정)에 탑재

